

가 정 통 신 문 제 2021-16호	2학기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등교중지 출석인정 안내	
보건실	우) 55071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55 ☎교무실220-9202~3. ☎ 보건실 220~9267. Fax 222~190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밀폐되고 밀집된 다중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학기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귀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

자가진단 참여(입력)	<p>자가진단어플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p> <p>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p> <p>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p> <p>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p>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p>-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p> <p>-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p> <p>-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p> <p>- 검사받으러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p>

<p>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37.5℃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p>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p>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 수칙 준수 철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p>-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증지 기준 안내

【등교증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증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예)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p>[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2021. 8. 22.

완 산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